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12
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9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8일 신언근 의원(찬성 9명)
2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2일
3. 상정일자 :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18년 4월 3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희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빈곤아동은 학업중퇴, 자살, 알코올 중독,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.
-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,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1항제3호, 4호).

## 3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2) 예산조치 :
- 3)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사항으로 ‘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’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, 사업 내용에 아동 진로상담 및 교육사업과 보호자 교육 등을 신설함으로써, 아동 빈곤예방 사업의 확대 및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.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(안 제6조제1항제2호 신설)

- 개정조례안은 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’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,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아동 빈곤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다만, 위원회 심의 사항인 ‘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’은 「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아동빈곤예방법」)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“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”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, 서울시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-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1)에서 「아동복지법」(제12조)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한 “아동복지심의위원회”<sup>2)</sup>가 “아동빈곤예방위원회”의 업무와 기능을 대신하여 맡도록 하고 있으나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구체적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음.

<b>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</b>
<p><b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</b>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<u>빈곤아동의 복지·교육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</u>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b>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b>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

<b>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</b>
<p><b>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</b>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

1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2) 「아동복지법」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설치·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.

- 따라서 앞으로 아동 빈곤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「아동빈곤예방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이 요구되는 바, 지금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해태(懈怠)와 직무방치는 부작위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,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.

#### □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확대 (안 제7조제1항)

- 개정안은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의 영역을 각각 아동에 대한 진로 상담 및 교육 사업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확장하여 다차원적으로 아동빈곤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으로, 아동 빈곤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.
-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, 영양 섭취, 교육 투자, 주거환경,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며, 특히 청소년기-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을 높인다<sup>3)</sup>는 점을 감안하면,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은 아동이 아니라 아동의 주부양자인 부모에게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3) 여유진외(2016), 「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」, 33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 빈곤 예방 사업을 확대·강화하여 아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,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직무상 해태(懈怠)로 인해 수립·시행되지 않은 관계로, 서울시의 시행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점, 이로 인해 아동 빈곤 예방 관련 사항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,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8명, 참석위원 5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언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41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8일

발 의 자 : 신언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흥순, 진두생, 이혜경, 김제리,  
우창운, 김동윤, 김희걸, 주찬식,  
문종철 의원(9명)

## 1. 제안 이유

빈곤아동은 학업중퇴, 자살, 알코올 중독,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 (안 제6조제1항제2호).
- 나.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,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7조제1항제3호,4호).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 조치 :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
제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
4.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사업 추진 등)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업 추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</u></p> <p>4. <u>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